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1.08.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08.1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08.22.
-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1.08.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손 문 수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2)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 3)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4)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업체 및 대행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된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0 200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시달하면서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 규제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및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제재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고, 2009년 6월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을 각각 시달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0 본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주민만족도 평가” 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로 규정하였는바, 이중 “환류조치” 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비유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례의 수요자인 일반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적이고도 표준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안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8조제1항에서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또는” 은 선택적의미가 있으므로 구민, 관계공무원이나 청소·환경관련 단체 중 선택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또한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청소·환경관련 단체 구성원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조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하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유인책’은 보다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10조에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 등 공무원 4명,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수는 4명 이상 7명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적정 위원 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환경 분야 소속 의원을 1명 이내로 규정한 것은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13조제3항에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평가대상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0 안 제14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3호에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08.30.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촉대상 및 위원 수를 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함. (안 제2조제4호)
- 나.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를 “구민, 관계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구성원으로” 함. (안 제8조제1항)
- 다. “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 까지로 하고,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1호에 신설하며,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 (안 제9조제2항)
- 라. “3명”을 “4명”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함. (안 제10조제2항)
- 마.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평가대상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로 함. (안 제13조제3항)

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
로 함. (안 제14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를 “구민, 관계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 까지로 하고, 제1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을 “지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3명” 을 “4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를 “제2호” 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 중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를 “평가대상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p> <p>제2조(정의) (생략)</p> <p>1.~3. (생략)</p> <p>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3. (원안과 같음)</p> <p>4. ----- ----- ----- -----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 한다.</p>
<p>제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u>구민, 관계공무원</u>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 ----- <u>구민, 관계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u> 구성원으로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1.~2. (생략)</p> <p>3. 평가결과에 따른 <u>유인책, 계약 해지 등</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3. (원안 제1호~제2호와 같음)</p> <p>4. ----- <u>지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u>에 관한 사항</p> <p>5. (원안 제4호와 같음)</p>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1. 청소,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u>3명</u> 이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환 경 분야 소속 의원 <u>1명</u> 이내 3.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원안과 같음) 1. ----- <u>4명</u> ----- < 삭제 > 2. (원안 제3호와 같음) ③~④ (원안과 같음)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u>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u> <u>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u> <u>다.</u> ④ (생략)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 ----- <u>평가대상 업체에 보완을</u> <u>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u> <u>할 수 있다.</u> ④ (원안과 같음)
제14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 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 ----- <u>반</u> <u>영하여야 한다.</u>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 안 번 호	11-51
------------	-------

제출년월일 : 2011.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 다.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업체 및 대행업체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3. 제정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항 제2호

4. 제정조례안: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 예산반영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7.14 ~ 8.3.(제출된 의견 없음)

나. 제16회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원안의결, 2011.8.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 및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경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5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정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따른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환경 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

3. 청소·환경 관련 단체 구성원 3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간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업무 조정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